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53
----------	-------

발의연월일 : 2025. 6. 24.

발 의 자 : 서미화 · 최민희 · 권향엽
윤종균 · 김원이 · 이수진
서영석 · 안태준 · 오세희
박정현 · 이용선 · 김 윤
양문석 · 김영환 · 강준현
김예지 · 전종덕 · 박지원
허성무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5개)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함. 하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반 산부인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이러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

는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
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
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
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8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8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088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u> ⑥ <u>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